

보상직원이 알려주지 않는 자동차보험 이야기\_04

# 차량 보상 한도와 담보 별 할증

*Auto insurance compensation, and start.*

# Contents Flow



## 과정개요

- 1 자차와 대물의 보상 한도 이해
- 2 자차의 중요성
- 3 담보별 할증 이해
- 4 피해자 과실 적용의 이해



## 기대효과

정확한 이해로 고객 관리 및 숨은 보험금 찾기

## 제2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연도 및 최초신규등록년도

- 차량기준가액표상 연도는 최초신규등록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최초신규등록년도란 차량출고 이후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로 처음 등록한 연도를 말한다. 단, 최초등록년도 이전에 운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는 해당연도를 적용할 수 있다.
- 가액표의 연도구분 중 2018A는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하인 차량이고, 2018B는 2018년도 차량 중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차량을 말한다. 단, 보험기간 개시 후 10일을 초과하여 최초등록한 2018년도 임시운행 자동차의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고가 발생했는지라도 보험기간 개시 후 6개월 10일을 초과했을 시 기준가액은 2018B를 적용한다.

## 제6조(보상하는 손해)

- ① 대인배상 II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 I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정함)를 보상합니다.
-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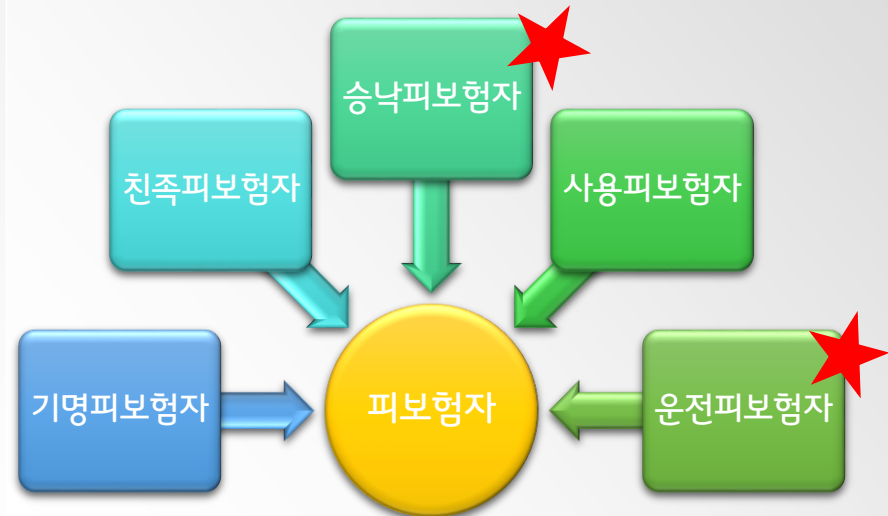
## 제7조(피보험자)

###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 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 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 대인배상 II, 대물배상\_보통약관

## 제8조(보상하지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 (계약기간이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8.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대인배상 II, 대물배상\_보통약관

## 제8조(보상하지않는 손해)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I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서 보험회사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별표2]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 \_1, 수리비용

### 가. 지급대상 :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 나. 인정기준액

##### (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 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 (2) 열처리 도장료

수리 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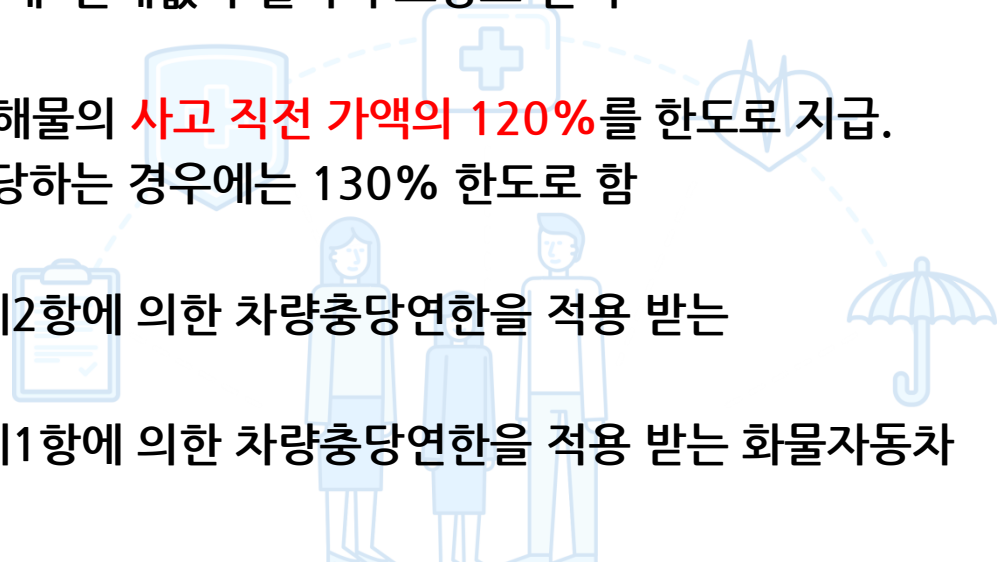
#####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  
다만, 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 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 받는 화물자동차



# 내용연수표

용도		차종		내용연수
자가용		승용차		15년
		버스		15년
		화물차		15년
		이륜자동차		6년
영업용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소형) (배기량 1500cc 미만)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일반택시(소형) (배기량 1500cc 미만)	3년 6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자동차대여 사업용	중/소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중/소형	6년
			대형	10년
	승합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0년 6개월
		기타사업용		9년
화물자동차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8년	
	기타사업용		11년	
이륜자동차				4년
농업기계	콤바인(자탈형), 이앙기, 관리기, 이식기, 예취기			5년
	동력경운기, 스피드, 스프레이어			6년
	농용트랙터, 농용엔진, 곡물건조기			8년





## [별표2]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 \_2, 교환가액

###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 나. 인정기준액

-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



# 자기차량손해 VS 대물의 보상 한도

1. 차량가액 vs 중고시세
2. 차량가액과 중고시세는 다르다.(보통의 경우 차량가액이 높다)
3. 무과실인 경우 꼭 대물로 보상 받아야 하는가?
4. 자기부담금과 할증
5. 우리가 할일



[2019.4/4분기]  
(가계단위 : 10,000원)

자  
가  
용  
순  
유  
차

자가용순유차(현대)

차명	형식	세종	승 차 수	기 종 일	연 료 (9월 연료)	공 회 차 량	2019A	2018H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그랜저HD 3.0(네오프리)	-	현대자동차,오르,에이전, P/L,ABS,ACE-D,DM	40	19	2000	5	61Q07			2,068	1,793	1,823	1,818					
그랜저 HD	-	H0240 프리 엔젤,오르,에이전,JVSLA REL,ABS-D,DM	40	19	2000	5	61Q00			2,007	1,757							
그랜저 HD	-	H0200 워스,후시M, 엔젤,오르,에이전,JVSLA REL,ABS-D,DM	40	19	2000	5	61Q02			2,624	2,209							
그랜저 HD	-	H0200 프리,에이 엔젤,오르,에이전,JVSLA REL,ABS-D,DM	40	19	2000	5	61Q01			2,329	1,958							
그랜저 2.0(뉴+1.8리프)	-	프리,에이 엔젤,오르,에이전,JVSLA REL,ABS-D,DM	40	19	2000	5	61Q08			2,424	2,067							
그랜저 2.0(뉴+1.8리프)	-	프리,에이 엔젤,오르,에이전,JVSLA REL,ABS-D,DM	40	19	2000	5	61Q25			2,256	2,006							
그랜저 30(가젤)	-	H0200 프리 엔젤,오르,에이전,JVSLA REL,ABS-D,DM	40	19	2100	5	61Q03			2,212	1,961							
그랜저 30(가젤)	-	H0200 프리,에이 엔젤,오르,에이전,JVSLA REL,ABS-D,DM	40	19	2100	5	61Q04			2,425	2,070							
그랜저 30	-	H0200 워스,후시M, 엔젤,오르,에이전, P/L,ABS,ACE-D,DM	40	17	2000	5	61Q06	2,829	2,113	2,297	2,485	2,063						
그랜저 30	-	H0200 워스,후시M, 엔젤,오르,에이전,JVSLA REL,ABS-D,DM	40	17	2000	5	61Q09	2,829	2,380	2,328	2,671	2,184						
그랜저 30	-	H0240 프리,오르,에이전,P/L,ABS, L,ABS-D,DM	40	17	2000	5	61Q05	2,566	2,881	2,330	2,124	1,771						
그랜저 30	-	H0240 프리,에이 엔젤,오르,에이전,JVSLA REL,ABS-D,DM	40	17	2000	5	61Q06	2,156	2,788	2,412	2,197	1,826						
그랜저 30	-	H0240 프리,에이 엔젤,오르,에이전,JVSLA REL,ABS-D,DM	40	17	2000	5	61Q07	2,386	2,947	2,571	2,248	1,904						
그랜저 30(가젤)	-	H0200 프리,에이 엔젤,오르,에이전,JVSLA REL,ABS-D,DM	40	17	2100	5	61Q02	2,832	2,208	2,778	2,467	2,071						
그랜저 30(가젤)	-	H0200 프리,오르,에이전,JVSLA REL,ABS-D,DM	40	17	2100	5	61Q00	2,942	2,861	2,500	2,249	1,904						
그랜저 30(가젤)	-	H0200 프리,에이 엔젤,오르,에이전,JVSLA REL,ABS-D,DM	40	17	2100	5	61Q01	2,441	2,048	2,627	2,378	1,966						
그랜저 HD 3.0(네오프리)	-	프리, 에이전,오르,에이전,JVSLA REL,ABS-D	40	17	2000	5	61Q01	2,715	2,284	2,068	1,786	1,517						
그랜저 HD 3.0(네오프리)	-	현대자동차,오르,에이전, P/L,ABS,ACE-D,DM	40	17	2000	5	61Q03	2,829	2,288	2,518	2,181	1,867						
그랜저 HD 3.0(네오프리)	-	프리, 에이전,오르,에이전,JVSLA REL,ABS-D	40	17	2000	5	61Q03	2,829	2,317	1,888	1,708	1,467						
그랜저 HD 3.0(네오프리)	-	프리,오르,에이전,P/L,ABS, L,ABS-D,DM	40	17	2000	5	61Q24	2,896	2,883	2,102	1,881	1,516						
그랜저 HD 2.4(네오프리)	-	프리, 에이전,오르,에이전,JVSLA REL,ABS-D	40	17	2000	5	61Q00			1,741	1,484							
그랜저 30(가젤)	-	(명)H0200 프리,에이 엔젤,오르,에이전,JVSLA REL,ABS-D,DM	40	17	2000	5	61Q22	2,170	2,788	2,401	2,090	1,768						
그랜저 30(가젤)	-	(명)H0200 워스,후시M, 엔젤,오르,에이전,JVSLA REL,ABS-D,DM	40	17	2000	5	61Q08	2,906	2,084	2,624	2,278	1,928						
그랜저 30	-	H0200 프리,에이 엔젤,오르,에이전,JVSLA REL,ABS-D,DM	40	20	2042	5	61213	4,251	2,782	3,249	2,798							
그랜저 30 하이브리드	-	현대자동차, 엔젤,오르,에이전,JVSLA REL,ABS-D,DM	40	17	2000	5	61942	2,819	2,490	2,288	2,028							
그랜저 30 하이브리드	-	현대자동차,오르,에이전, P/L,ABS,ACE-D,DM	40	17	2000	5	61241	2,708	2,272	2,820	2,446							
그랜저 30 하이브리드	-	프리,에이 엔젤,오르,에이전,P/L, ABS,ACE-D,DM	40	17	2000	5	61240	2,812	2,100	2,698	2,216							
그랜저 30	-	H0240 워스,후시M, 엔젤,오르,에이전,JVSLA REL,ABS-D,DM	40	17	2000	5	61201	2,600	2,186	2,897								
그랜저 30	-	H0200 프리,에이 엔젤,오르,에이전,JVSLA REL,ABS-D,DM	40	17	2000	5	61203	2,496	2,086	2,604								
그랜저 30(2019년형)	-	H0200 워스,후시M, 엔젤,오르,에이전,JVSLA REL,ABS-D,DM	40	17	2000	5	61212	2,872	2,418	2,207								
그랜저 30(2019년형)	-	H0200 프리,에이 엔젤,오르,에이전,JVSLA REL,ABS-D,DM	40	20	2042	5	61214	4,270	2,788	2,528								

신형그랜저 HG	<u>240</u>	A/T 모던	3,012	1550 1400	1400 1300	1300 1250
	300	A/T 프리미엄	3,312	1700 1550	1550 1400	1400 1250
		A/T 익스클루 시브	3,463	1800 1700	1700 1550	1550 1450
	3.3	A/T 셀러 브리티	4,093		1850 1650	1650 1500

차 명		구분	신차가격	17	16
그랜저 IG	2.4 GDI	A/T 모던	3,055	2300 2150	2150 1950
	2.4 GDI	A/T 프리미어	3,175	2400 2250	2250 2050
	3.0GDI	A/T 익스클루 시브	3,550	2650 2500	2500 2400



# 할인/할증 제도의 이해 - 사고내용 별 점수표

## 평가대상 기간 내 사고 적용 방법

- ① 사고점수 합계는 소수점 이하 버리고 적용
- ② 사고기록 점수 합계가 1점 미만인 경우 할인유예 적용
- ③ 보호등급을 적용 받고 있는 경우 사고점수합계에 (-1)을 적용

구분	사고내용		점수		
대인사고	사망		건당 4점		
	부상	1급		건당 3점	
		2급-7급	건당 2점		
		8-12급			건당 1점
		13-14급			
물적사고	물적사고 할증기준 이하 사고	건당 0.5점			
	물적사고 할증기준 초과 사고	건당 1점			
	가해자불명 1점 사고	건당 1점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건당 1점		



# 교통 법규 위반 경력 요율표

할증률	적용대상 법규위반 (도로교통법)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무면허, 뺑소니</li> <li>② 음주운전 2회 이상</li> <li>③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4회 이상 AND 음주운전 1회</li> </ul>
15%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2-3회 이상 AND 음주운전 1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4회 이상</li> <li>② 음주운전 1회</li> </ul>
5%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2-3회
0%	기본법규 위반 또는 사고
할인	위반 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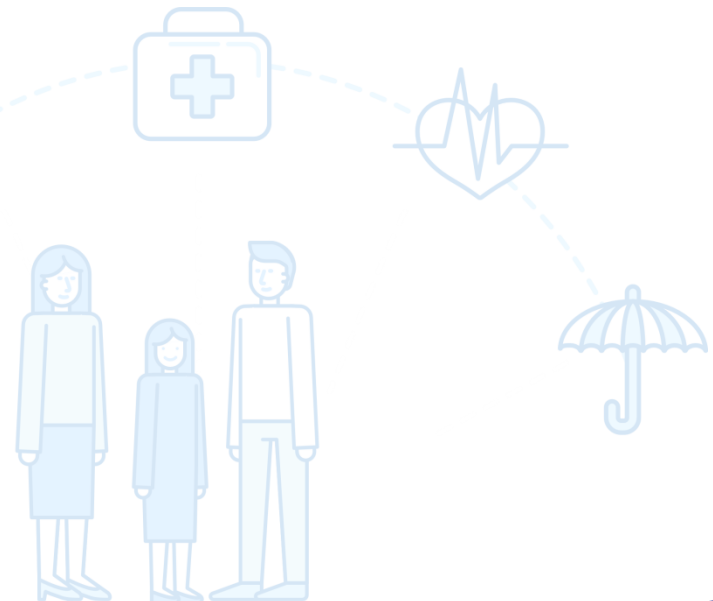
#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할인/할증 기준변경)

2018년 1월부터 시행

쌍방과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피해자임에도  
가해자와 동일하게 보험료가 할증되는  
**현행 할인.할증제도에 대한 개선**

**그것이 알고싶다**



**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은 할증심사에서 제외**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h1>브리핑 자료</h1>			 보험개발원
	보도	2017. 7. 11.(화) 조간	배포	

책 임 자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진 태 국(02-3145-7460)	담 당 자	문 형 진 팀장 (02-3145-7466)
	보험개발원 실장 정 태 윤(02-368-4277)		임 주 혁 팀장 (02-368-4276)

**제 목 : '17.9.1.부터 과실비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증폭이 달라집니다**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①-1 실행방안)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50% 미만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 대폭 완화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50% 이상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은 현행과 동일수준 유지

# 현행 할증제도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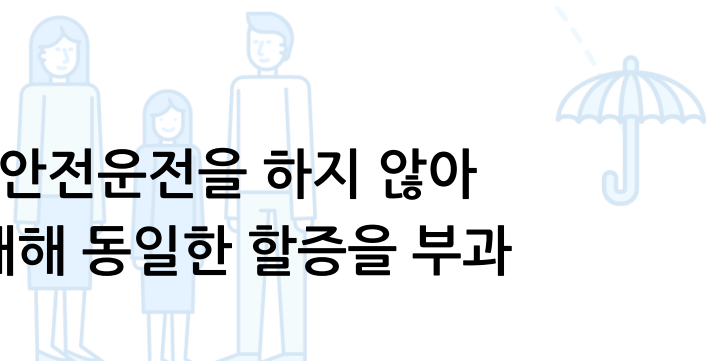
## 가해자, 피해자 구분없이 피해자도 보험료 할증

### < 가·피해자간 형평성 훼손 사례 >

- 사고내용 : 甲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던 중 2차선에서 직진하던 乙의 차량과 충돌하여 甲·乙 모두 상해를 입고 각각 사고내용점수 2점 발생
  - 과실비율 : 甲 80%, 乙 20%(가해자 甲의 기본과실은 70%이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과실 10% 추가부담)
  - 할인·할증등급 : 甲 15등급, 乙 20등급(甲·乙 모두 직전 3년간 無사고)
- ➔ 과실비율 20%인 乙도 과실비율 80%인 甲과 동일하게 2등급 할증(보험료 약 13% 상승)

##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사고 예방기능 미흡

자동차사고의 대부분 가해자가 교통법규 미 준수 및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발생함에도 교통사고를 유발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 동일한 할증을 부과



# 할증제도 개선방안 (1)

##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차등화 : 피해자는 할증 완화

(사고심도:할인.할증 요율) 최근 1년간 발생한 피해자의 자동차사고 1건은 사고내용 점수 산정 시 제외

### < 할인·할증요율 개선 전·후 비교(심도) >

□ 사고내용 : 甲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던 중 2차선에서 직진하던 乙의 차량과 충돌하여 甲·乙 모두 상해를 입고 각각 사고내용점수 2점 발생

□ 과실비율 : 甲 80%, 乙 20%(가해자 甲의 기본과실은 70%이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과실 10% 추가부담)

⇒ (개선) 사고기여도가 큰 가해자 甲은 현재와 동일하게 2등급 할증, 사고 기여도가 작은 乙은 현재 등급 유지(할증은 없음)

#### < 현 행 >

甲(가해자)	15등급→13등급 (2등급 할증)
乙(피해자)	20등급→18등급 (2등급 할증)

#### < 개선(안) >

甲(가해자)	15등급→13등급 (현재와 동일하게 2등급 할증)
乙(피해자)	20등급→20등급 (현재와 동일한 등급 유지)

### < 사고건수요율 개선 전·후 비교(빈도) >

□ 사고내용 : 甲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던 중 2차선에서 직진하던 乙의 차량과 충돌하여 甲·乙 모두 상해를 입고 각각 사고내용점수 2점 발생

□ 과실비율 : 甲 80%, 乙 20%(가해자 甲의 기본과실은 70%이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과실 10% 추가부담)

□ 사고이력 : 甲·乙 모두 직전 3년간 無사고

⇒ (개선) 사고기여도가 큰 가해자 甲은 현재와 동일하게 3년 및 1년간 사고건수에 모두 포함하고, 사고기여도가 작은 乙은 3년간 사고건수에만 포함 (최근 1년간 사고건수에서 제외)

#### < 현 행 >

甲(가해자)	▶ 3년 사고건수 : 1건 ▶ 1년 사고건수 : 1건
乙(피해자)	▶ 3년 사고건수 : 1건 ▶ 1년 사고건수 : 1건

#### < 개선(안) >

甲(가해자)	▶ 3년 사고건수 : 1건 (현재와 동일하게 3년 및 1년 사고건수에 모두 포함)
乙(피해자)	▶ 3년 사고건수 : 1건 ▶ 1년 사고건수 : 0건 (1년간 사고건수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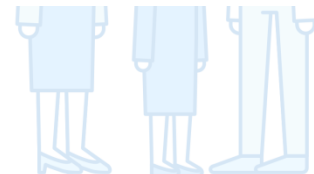
## 할증제도 개선방안 (2)

- 가해자의 과도한 보험료 인상 방지 : 가해자는 현행과 동일한 할증
- 제도개선 효과

< 할인·할증제도 개선효과 종합 >

구 분		현 행	개 선(안)
사고심도 평가 (할인·할증요율)	가해자 甲	할증	현재와 동일하게 할증
	피해자 乙	가해자와 동일하게 할증	<u>할증없음</u>
사고빈도 평가 (사고건수요율)	가해자 甲	할증	현재와 동일하게 할증
	피해자 乙	가해자와 동일하게 할증	<u>할증완화</u>

\* 가해자 : 과실비율 50%이상 운전자, 피해자 : 과실비율 50% 미만 운전자



# 자동차보험 과실 비율별 할인할증 제도개선

## 취지

자동차보험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과실비율 5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동일하게 보험료가 할증되는 **현행 할인·할증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대두

☞ [민원사례] 도로 1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가해차량이 갑작스럽게 2차선으로 차선을 급변경하면서, 2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차량과 충돌하였는데(과실비율 8:2), **피해자는 과실이 거의 없는 상황임에도 보험료가 할증**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억울함을 호소

## 주요내용

구분	할인할증등급	사고횟수별 특성요율
가해자 (과실비율 50% 이상)	변경사항 없음	
피해자 (과실비율 50% 미만)	평가대상기간(1년)내 저과실 사고 1건, <b>사고점수 미평가</b>	평가대상기간(1년)내 저과실 사고 1건 <b>1년 사고횟수 미만영</b>

## 시행일정

- ✓ 사고반영 : 2017년 **9월1일 발생사고부터** 반영
- ✓ 계약체결시 반영 : 2017년 **12월1일**이후 책임개시 계약부터 반영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50% 미만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 대폭 완화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50% 이상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은 현행과 동일수준 유지



# 보험환입 제도

- 지난 보험처리기록으로 보험료 등급이 떨어졌다면 받은 보상금을 돌려주고 보험처리기록을 삭제하라!
- 아무리 경미한 사고여도 우선 보험 적극 활용!  
〈만약, 보험료 등급이 떨어졌다면 환입 제도 이용〉

